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2가단5230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 고 1. A

2. B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현

변 론 종 결 2024. 8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주 문

-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.
-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A와 C 사이에 2021. 2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21. 2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 A와 C 사이에 2021. 8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116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A는 원고에게 11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소와 피고 A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.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나.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들과 C 사이에 2021. 2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혼동 및 해지로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.

2. 피고 B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

가. 이 사건의 쟁점

채무자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B에게 2021. 8. 2.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이다.

나. 판단

1)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. 한편 채무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1. 8. 2.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C의 적극재산은 합계 5,106,000,000원(C 소유의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다고 취소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)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4,864,922,000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무자력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.

구분	순번	재산의 표시	평가액(원)	근거
적극재산	1	전남 무안군 [] 동 [] 동 등 상가 [] 호 목포시 [] 호	3,900,000,000원	○을 제1호증 내지 10호증
	2	목포시 [] 호	126,000,000원	○을 제11호증
	3	비전스윙형 10대	410,000,000원	○을 제17호증
	4	벤츠 차량	220,000,000원	○을 제18, 19호증
	5	목포시 [] 토지 및 지상의 건물	450,000,000원	○을 제12 내지 16호증
		소 계	5,106,000,000	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윤봉학

별지